

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

①사업부서	청렴총괄과	②담당자 (연락처)	송영희 사무관 (02-360-6522)
③정책사업명	「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」 제정		
④선정기준	법률·대통령령 제정사항	⑤사업기간	'11.6월~
⑥주요내용	☐ 추진배경 ○ 공직자의 부패사건으로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※ 일반국민의 53.7%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('13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) ○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통한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※ 추진경과 : 국무회의 의결('13.7.30), 국회제출('13.8.5),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('13.12.6),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상정('14.4.25) ☐ 법안 주요내용 ○ (부정청탁 금지)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○ (금품수수 금지) 공직자는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금품 수수를 금지 ※ 다만, 통상적인 사교·의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선물, 친구·친척 등이 제공하는 경조사비 등 사회적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사회상규 범위내의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 ○ (이해충돌 방지)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, 직무관련자와의 금전차용·부동산 거래 제한,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 ○ (신고·처리절차)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상담 신고 등 대응장치 마련,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경우 반환 등 처리절차 마련		